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주식회사 케이티스(이하 "회사"라 한다)가 행하는 공사, 물품구매, 용역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규정,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계약담당에게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공사업면허(등록수첩, 자격등록증 사본) 또는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사본의 내용이 원본과 일치함을 보증하기 위하여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④ 시스템에 의한 입찰의 경우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체등록을 완료한 업체는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 또는 교부 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권유문
2. 입찰유의서
3. 표준계약서(소정서식)
4. 일반조건
5. 특수조건
6. 설계서, 규격서("기술요구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물량내역서 및 동 물량에 대한 단가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설명서, 현장설명서, 과업지시서
7.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발주부서는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관련규정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와 입찰 관련 규정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 과정에서 발견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계약담당 또는 발주부서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현장설명) ① 공사입찰의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5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매설치 일괄계약의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금융기관 지급보증서,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의한 공제조합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등 이와 동등한 기관이 보증하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담당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낙찰 후 계약체결 불이행 시 면제된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겠다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입찰참가) ① 제3조 의한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제3조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여 대리인으로 위임할 수 있다.

③ 회사의 불성실업체 관리지침에 의한 불성실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위임할 수 없다.

제9조(견품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견품에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상호포함)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 이행 후, 낙찰자 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당해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과 반환에 따른 경비 부담에 대하여 발주부서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0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의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참가신청서에 신고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 ③ 입찰서의 입찰금액은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 ④ 장기계속계약의 입찰금액은 총공사, 총물품·제조, 총기술용역을 대상으로 입찰하여야 한다.
- 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물품 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 2단계 경쟁입찰의 경우에 있어서는 규격(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규격(기술)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제출하거나, 시스템에 의한 입찰의 취소의사를 송신한 경우로서 계약담당이 입찰 포기 승인을 한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부서는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입찰일 등을 연기할 수 있다.

1.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참가자 전원에게 정보통신망, 서신 등의 방법으로 통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계약규정 제12조의 규정에서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계약담당은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목표가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를 지체 없이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공사·용역적격심사기준에 의거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은 (입찰금액과 목표가격을 대조하여)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2단계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시설공사·용역적격심사기준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이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첨을 실시함에 있어서 추첨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⑤ 희망수량에 의한 단가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중 목표가격 이하의 최저 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 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 순위의 낙찰자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우선 순위의 낙찰자로 하며, 입찰수량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우선 순위의 낙찰자를 결정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TCO 구매, 전략적 가격과 이익개념의 가격으로 목표가격을 산정한 경우 및 입찰가격 외에 품질, 성능, 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은 당해 입찰의 평가기준을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⑦ 계약담당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당해 물품의 품질 등 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⑧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 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계약담당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발주부서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규정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으로

부터 당해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④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공사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총공사낙찰금액(설계 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며, 제1차 공사 및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⑤ 장기물품제조계약 및 장기기술용역계약의 경우에도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과 낙찰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8조(현금으로 납부된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낙찰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9조(계약의 이행보증)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조 및 제8조, 물품계약일반조건 제6조,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20조(불성실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회사의 불성실업체관리지침에 의거 불성실업체로 제재 받은 경우에는 동 제재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1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입찰자는 발주부서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찰참가자 또는 낙찰자는 입찰 외의 목적으로 입찰정보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회사의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22조(기타사항)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규정 및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시스템 이용약관 등 회사의 계약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